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5(목) 10:00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푸른미래도시국 건축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추 병 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0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2.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정비(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비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4항제1호)
-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정비(안 제7조제2항)
- 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1)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정비(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 「지진재해대책법」(2015. 7. 24)이 제명 변경으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으로 정비

2) 「건설기술관리법」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비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으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4항제1호)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2014. 5. 23) 해당 조문을 변경함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정비(안 제7조제2항)

○ 제명이 「실내공기질 관리법」(2016. 12. 23)으로 변경됨

4)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개정 조항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적기에 정비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세심한 조례의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